

<종교시설용지>

제77조 (건축물의 용도, 건폐율, 용적률, 높이, 가구수 등)

- ① 종교시설용지의 건축물의 용도, 건폐율, 용적률, 높이의 최고 한도는 [표Ⅱ-5-2]에 의하며,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지침도에 따른다.

[표Ⅱ-5-2] 종교시설용지의 허용용도, 건폐율, 용적률, 높이 분류표

구분		종교시설용지
건축물 용도	도면표시	E2
	허용용도	•종교시설 및 부대시설
	불허용도	•허용용도이외의 용도
용적률		200%이하
건폐율		60%이하
최고층수		5층이하

- ② 종교시설용지내 건축물 용도표시는 E2로 구분하며 세부용도표시는 [그림Ⅱ-5-2]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표기한다.

[그림Ⅱ-5-2] 종교시설 지침내용 도면 표시 예시도

가 구 번 호		E2		가구번호 : 종교시설용지 가구번호
용적률	최고높이	200%	5층	용 적 률 : 200%이하
건폐율	최저높이	60%	-	건 폐 율 : 60%이하
				최고높이 : 5층이하
				최저높이 : -

제78조 (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)

- ① 건축물의 외벽은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입면을 다양화하고 가급적 소재자체의 질감을 활용하여 입면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.

- ② 종교시설용지의 지붕형태 및 옥탑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가. 옥상층의 부대시설(옥탑, 철탑 등)의 높이는 4.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.

나. 네온, 백열등류의 장식 등의 설치를 금지하며, 간접조명을 권장한다.

<그림Ⅱ-5-3> 종교시설의 높이규제 예시도

